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업목적(고등학교 이하) 저작물 이용 FAQ

2020. 4. 13.

(※ 질의응답 내용 개선 시 수정 재배포 예정)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순서

1. FAQ 개요 .....	1
2. 수업목적(고등학교 이하) 저작물 이용 요건/기준 .....	2
3.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권 궁금사항(Q&A) ...	3
질문1. 교과서 내의 저작물 이용 .....	3
질문2. 출판사 제공 학습자료 이용 .....	4
질문3. e학습터에서 EBS 콘텐츠 이용 가능 여부 ...	5
질문4. ICT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	6
질문5. 저작물의 이용 환경 .....	8
질문6. 원격수업 내 배경 음악 이용 .....	9
질문7. 폰트의 이용 .....	11
질문8. 수업 중 화면 갈무리(캡처) .....	13
질문9. 복제방지 조치 그림/사진의 이용 .....	14
질문10. 외부인 접근가능한 누리집 및 유튜브 등에 수업 영상 제공 .....	15
질문11. 문제집·참고서 활용 .....	16
질문12. 영상 편집 프로그램 활용 .....	17

※ 본 자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제작함

# 1 FAQ 개요

## □ FAQ 배경 및 성격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0년 4월 9일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함에 따라,
  -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저작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관련단체**가 함께 협의를 하였습니다.
- 이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업목적(고등학교 이하) 저작물 이용 요건/기준**」과 「**원격수업 및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권 주요 질의응답**」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 따른 협의사항으로 코로나19 종료시 동 기준에 의해 활용된 수업자료 등은 삭제조치가 필요합니다.**

## □ 저작권 이용시 공통사항

- 합법적인 저작권 이용의 공통사항으로 “①**접근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수업주체인 교사·학생만 로그인 활용) ②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③ **출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접근제한 조치·복제방지 조치** : 수업주체인 학생, 교사만 이용하도록 로그인 등으로 접근 제한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법령 해석 : 접근제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제한된 학생과 교사만이 이용 가능하여 복제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경고문구 예시** : 본 수업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본 수업자료를 외부에 공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출처 표시** :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녹화영상, 강의교안, 참고자료 등)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이용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시) 출처 : 국어교과서 20p, 00기관 00영상

# 2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업목적(고등학교 이하) 저작물 이용 요건/기준

구 분	이용 요건
이용대상 저작물	· 공연, 공중송신,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저작물
이용주체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
이용기간	· <b>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b> · 추후 코로나19 종료 후 교육부 원격수업 체계 개편 시 저작권 이용 범위에 대해 다시 논의
이용기준	· <b>(원칙)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b> · <b>(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b> - 저작물을 시장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 <u>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u> - <u>시장에서 판매되는 음원·영상 저작물 전체를 제공하는 이용</u> - <u>시장에서 판매되는 도서(교과용도서 제외),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전송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전송하게 되는 이용</u> - <u>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 이외의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업에서의 이용</u> ※ ①수업주체인 학생, 교사만 이용하도록 로그인 등으로 접근 제한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접근·복제 방지 조치, ②코로나19 끝나고 활용교재 삭제 조치
저작권인격권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나,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표시	· <b>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b>

## 질문 1 (교과서(국정·검인정) 내의 저작물 이용)

원격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의 사진, 동영상, 지문 등의 내용을 이용해도 될까요?

- (1) 원격수업을 포함하여 학교수업 목적으로 교과용도서 내의 사진, 동영상, 지문 등 저작물의 일부 내지 전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다만,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접근제한조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포함, 출처 명시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3) 수업 또는 수업지원 목적 이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교과용도서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파일 등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공통사항 : ①접근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수업주체인 교사·학생만 로그인 활용) ②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③ 출처 표시

## 질문 2 (출판사 제공 학습자료 이용)

수업 지원을 위해 출판사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학습자료를 원격수업에 이용해도 될까요?

- (1) 출판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체 저작권을 가진 학습자료(PPT, 동영상, 학습지 등)의 일부를 이용하여 원격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다만,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접근제한조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포함, 출처 명시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접근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수업주체인 교사·학생만 로그인 활용) ②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③ 출처 표시

### 질문 3 (e학습터에서 EBS 콘텐츠 이용 가능 여부)

e학습터에서 EBS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나요?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분량의 자료를 사용해야 되나요?

(1) EBS 영상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EBS의 온라인클래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EBS 온라인클래스가 아닌 **원격교육플랫폼(e학습터 등)**에서는 20%(최대 15분 이내)\*을 허용하고 있어 활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EBS와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공통사항 : ①접근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수업주체인 교사·학생만 로그인 활용) ②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③ 출처 표시

※ 4월 16일 이후 EBS 온라인클래스 네트워크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의 여유가 확인되면 EBS콘텐츠 이용에 대해 다시 검토 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미래교육기획부-177(2020.4.9.))

### 질문 4 (ICT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원격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1)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으므로, 원격수업에서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 문체부 및 저작권관련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4.7)를 통해 **코로나19**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까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외 활용가능

\*\* ‘공중송신’이란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을 말하며,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 < \*\*\* 5가지 침해하는 행위 >

1. 저작물을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2.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3.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원·영상 저작물 전체를 제공하는 이용
4.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교과용도서 제외),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전송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전송하게 되는 이용
5. 수업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 이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업에서의 이용

※ ①수업주체인 학생, 교사만 이용하도록 로그인 등으로 접근제한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접근·복제 방지 조치, ②**코로나19** 끝나고 **활용교재 삭제 조치**

\* 공통사항 : ①접근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수업주체인 교사·학생만 로그인 활용) ②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③ 출처 표시

(2) 수업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유·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과정(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른 학교 수업, 학교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및 교육활동(보충수업,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범교과 학습 활동, 계기 교육,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말합니다.

- \*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
- ※ 수업은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야간수업, 계절제 수업, 시간제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다.
- ※ 수업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가 사용된 수업자료를 시·도 교육청 등의 관리·감독 하에 공유할 수 있다.

(3)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녹화영상, 강의교안, 참고자료 등)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이용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하며,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시) 출처 : 국어교과서 20p, 00기관 00영상

### 질문 5 (저작물의 이용 환경)

**학교의 원격수업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외에 온라인 카페, 개인 블로그, SNS 등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1) 학교(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전송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작물 등에는 동일한 교과목의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할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합니다.

-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저작물 등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2) 유튜브의 기존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링크하여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를 유튜브에 탑재(업로드)할 때는 열람제한(학생, 교사)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아울러, 수업을 위해 유튜브에 탑재한 수업자료는 코로나19 종료 시 삭제조치가 필요합니다.

## 질문 6 (원격수업 내 배경 음악 이용)

학교의 원격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음원을 배경 음악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1) 학교(교사)는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악 저작물에 해당하는 음원의 일부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문체부 및 저작권관련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4.7)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까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외 활용가능

### < \*\*\* 5가지 침해하는 행위 >

1. 저작물을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2.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3.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원·영상 저작물 전체를 제공하는 이용
4.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교과용도서 제외),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전송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전송하게 되는 이용
5. 수업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 이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업에서의 이용

※ ①수업주체인 학생, 교사만 이용하도록 로그인 등으로 접근제한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접근·복제 방지 조치, ②**코로나19** 끝나고 **활용교재 삭제 조치**

(2) 하지만, 학습 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원격수업 내 배경음악으로 전체 음원 이용이 필요하다면, 저작권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공유 저작물 이용을 권장합니다. 공유 저작물은 아래 관련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며, 공유 저작물이 아닌 음원 저작물 전체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 ①**접근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수업주체인 교사·학생만 로그인 활용) ②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③ 출처 표시

### (참고)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

- 공유마당 : <https://gongu.copyright.or.kr>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 자멘도 : <https://www.jamendo.com>
- 프리뮤직아카이브 : <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 프리사운드 : <http://freesound.org>
- 씨씨믹스터 : <http://ccmixter.org/>
- 플래티콘 : <https://www.flaticon.com>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질문 7 (폰트의 이용)**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다면 무료폰트는 안전한가요?**

(1)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c://windows/Fonts)에 저장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윈도우 번들 폰트를 한글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 회사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를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따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프로그램 설치 시 폰트폴더(c://windows/Fonts)에 저장되어 타 프로그램에서 자동 인식되어 사용된 폰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2) 무료폰트는 유료폰트와는 달리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로,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무료폰트라도 반드시 이용조건을 확인 후 허용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학교 교육을 위한 폰트 이용**

- 글자체인 폰트는 폰트 도안(디자인)과 폰트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법원은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업 자료 제작에 사용된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는지 등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 문체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3) 더불어, 누구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미리 이용허락하여 놓은 71종 글꼴파일을 모은 ‘안심글꼴파일’을 아래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적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불가)

\* 문체부 : [www.mcst.go.kr](http://www.mcst.go.kr) > 주요정책 > 정책홍보 > ‘안심글꼴파일서비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 [gongu.copyright.or.kr](http://gongu.copyright.or.kr) > 팝업 또는 무료폰트 메뉴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 [www.kogil.or.kr](http://www.kogil.or.kr) > 팝업 또는 하단 롤링배너

**질문 8 (수업 중 화면 갈무리(캡처))**

수업 시 인물(학생, 교사, 저작물 중 인물)이 포함된 영상을 갈무리(캡처)하여 유튜브 등에 올려도 되나요?

(1)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갈무리(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학생들에게도 원격수업을 무단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무단 공유 시 저작권 침해는 물론 학교 교사, 학생, 저작물 중 인물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음을 주의 공지 필요

**질문 9 (복제방지 조치 그림/사진의 이용)**

인터넷에서 마우스 우클릭 금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복제가 금지된 그림과 사진 등의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나요?

(1) 마우스 우클릭 금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경우에 이를 해제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의2가 금지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찾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

- 공유마당 : <https://gongu.copyright.or.kr>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 자멘도 : <https://www.jamendo.com>
- 프리뮤직아카이브 : <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 프리사운드 : <http://freesound.org>
- 씨씨믹스터 : <http://ccmixter.org/>
- 플래티콘 : <https://www.flaticon.com>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질문 10 (외부인 접근가능한 누리집(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에 수업 영상 제공)**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누리집(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에 수업 영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의 문제는 없나요?

- (1)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사)는 수업을 목적으로 학생에게 공표된 저작물 일부가 이용된 수업 영상 제공이 가능하며,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조치 등 기술적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 (2) 따라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수업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수업목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유튜브의 기존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링크하여 수업 또는 수업 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를 유튜브에 탑재(업로드)할 때는 열람제한을 위한 비공개, 일부공개(링크를 학습자에게만 제공)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공통사항 : ①접근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수업주체인 교사·학생만 로그인 활용) ②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③ 출처 표시

**질문 11 (문제집·참고서 활용)**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 참고서를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나요?

- (1)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과 참고서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입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이용은 되지 않으며, 일부분씩 여러 차례 복사한 총량이 문제집의 구입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다.

\* 공통사항 : ①접근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수업주체인 교사·학생만 로그인 활용) ②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③ 출처 표시

**질문 12 (영상 편집 프로그램 활용)**

**개인적으로 다운 받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수업목적의 영상 편집에 활용해도 되나요?**

- (1)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2) 만약,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서 이용허락 범위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원격수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앱을 구입하여 활용 가능

**<문 의 처>**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
- ❖ KERIS 교육저작권 상담센터(053-714-0202)